

중남미연구소 HK연구인력 근무규정(세칙2)

규정번호 : 19-2

제정일자 : 2019.5.15.

개정일자 : 2019.08.26.

개정일자 : 2022.04.30

제1조 (목적 및 기본사항)

- ① 본 세칙은 HK교수 및 HK연구교수(이하 'HK연구인력'이라 한다)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HK연구인력은 단장이 지정한 기본업무, 공동업무, 주관업무, 협력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③ HK연구인력은 임용일자로부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근무하며, 주 5일,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(겸직 금지)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+사업단에 상근하며, 외부기관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제2조 (근무시간)

- ① 전임연구인력의 근무시간은 중남미연구소가 위치하는 서울캠퍼스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09:00-17:00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탄력근무 시 10:00-18:00까지 근무할 수 있다.

제3조 (강의 및 대외활동)

- ① HK연구교수는 주당 5시간 이내 기준 교내외의 중남미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아젠다 관련 강의는 단장의 승인 하에 추가 허용할 수 있다.
- ② 전임연구인력은 단장의 관리 하에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현지조사 등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4조 (휴가)

- ① 연차휴가는 1년 중 15일 사용할 수 있다.
- ② 휴가 시 사전에 휴가일정을 전담행정직원에게 통보한다.
- ③ (경조휴가) 직계존비속(조부모, 부모, 장인, 장모, 자녀 등)과 형제자매의 사망 시 7일, 가까운 친인척(삼촌, 사촌, 조카 등) 사망 시 1일을 경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④ (병가휴가) 상해 또는 중증 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,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병가를 받는다. 단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.

제5조 (자체평가) HK+사업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하는 자체평가 세부기준에

따라 연구 및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.

제6조 (내부평가) 단장은 HK+사업단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연구 인력의 연구 및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HK+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HK연구인력은 HK+사업단에서 정하는 내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연구 및 업무 수행 실적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7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HK+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 (규정 개정) 본 규정은 단장이 HK+사업단 집행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1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2)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선발된 HK연구인력은 이 규정에 의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3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4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) 이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